

2022년 변경 평가지표(안) 일부 유예 안내

■ 기 안내된 '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변경 지표(안)의 일부 지표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, 아래의 내용은 확정된 지표가 아니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, 해당 내용 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□ 검·교정 실시 평가 기준

☞ 한국인정기구(KOLAS)의 교정 주기에 준하여 평가

- (12개월) 전자저울, WBGT, 자동피펫
- (24개월) 가스측정기, 유량계, 소음측정기 및 보정기, 열선풍속계, 조도계

□ 고성능 장비 보유 및 무진동 테이블 설치

☞ 배점문항 → 가점으로 변경하여 평가

- 고성능 장비(6종), 무진동 테이블, 정전기 제거기 등 전체 8종 장비 보유 종수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
예시) 3종이상 보유(+10점), 2종이상 보유(+6점), 1종이상 보유(+3점)

□ 외부 전문화 교육 이수 시간 강화(유예)

☞ 인당기준 4시간 이수 → 16시간으로 변경

☞ COVID-19로 인하여 교육 이수 시간 변경 건은 유예

□ 자체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

☞ 증빙 및 확인서류 추가

- 계획문서, 사진, 참석자 서명, 회의자료, 결과보고서 등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인정됨

□ 고객만족도 조사

☞ 평가 배점 → 감점으로 변경하여 평가

- 고객만족도 조사는 실시하되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감점으로 평가
예시) 80점 기준으로 80점미만(-5점), 70점미만(-10점), 60점미만(-20점)

□ 현장 공시료 적용(유예)

☞ 세트별 1개 이상 → 세트별 2개 이상 평가

- 현장 공시료는 세트별 2개 이상 적용하는 경우 적용한 것으로 평가

☞ 기존 평가와 동일하게 현장 공시료는 세트별 1개 이상으로 적용

□ 검량선 및 탈착율 시험 동시 수행 여부

☞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불인정

-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센터 (☎ 02-6924-8876, 김주앙 과장)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